

[허위매출분쟁] 가게 양도인 허위매출, 매출조작 사기 사안 - 형사처벌 수위: 2018년 상반기

기 선고 판결 사례



1. 대구지방법원 2018. 1. 11. 선고 2017고단3000 판결 - 권리금 1억5천5백만원 사안, 징역 1년
2. 부산지방법원 2018. 1. 17. 선고 2017고단2328 판결 - 권리금 7천만원 사안, 징역 6월, 집행유예 1년, 80시간 사회봉사 명령
3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. 2. 7. 선고 2017고단5113 판결 - 권리금 1억5백만원 사안, 징역 1년, 집행유예 2년, 80시간 사회봉사명령

양형의 이유

이 사건 범행은,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권리금을 편취한 것으로서,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, 피해금액이 작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.

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,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, 피고인 A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, 피고인 B는 두 건의 이중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.

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, 성행, 환경, 범행의 수단 및 결과,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.

[양형기준]

- 사기범죄군, 일반사기, 제1유형(1억 원 미만) 등

이 사건 범행은 공문서를 변조·행사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, 피해자와 사이에 중개인 (주)F가 1,650만 원, 피고인이 4,050만 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하였고, 피고인이 위 합의에서 약속한 돈을 모두 배상한 점, 초범인 점에 피고인의 연령, 성행,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,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.

상가임대차보호법, 독점권, 권리금, 매출조작, 계약분쟁, 손해배상, 영업금지, 민사소송

T. 02-591-0657 E. kkh@kasanlaw.com H. www.kasanlaw.com